

March 22, 2021

## COVID-19 Newsletter

### 서울특별시 「코로나-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」 행정명령 변경

서울특별시는 2021. 3. 19.(금) 그 이틀 전인 2021. 3. 17.(수) 발령했던 「코로나-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」을 변경하였습니다(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148호). 변경된 행정명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전 지역에서 2021. 3. 17.부터 2021. 3. 31.까지 기간 동안 코로나-19 감염 위험이 높은 사업장(밀접·밀집·밀폐된 장소)에서 (1)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와 (2) 외국인 노동자(미등록 외국인 포함)에 대해 코로나-19 진단검사가 '권고'됩니다. 변경된 행정명령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법무법인(유한) 태평양의 뉴스레터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,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
**이 옥 래 변호사**  
T 02.3404.0684  
E [wookrae.lee@bkl.co.kr](mailto:wookrae.lee@bkl.co.kr)

**류 혜 정 외국변호사**  
T 02.3404.0262  
E [hc.elizabeth.yu@bkl.co.kr](mailto:hc.elizabeth.yu@bkl.co.kr)

번호	항목	내용
1	적용지역	서울특별시 전 지역
2	권고기간	2021. 3. 17.(수) ~ 2021. 3. 31.(수)(15일간)
3	권고대상	코로나-19 감염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서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와 외국인 노동자(미등록 외국인 포함)

4	권고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외국인 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: 권고기간 동안 외국인 노동자에게 코로나-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 권고</li> <li>※ 고위험 사업장에 고용된 내국인에 대해서도 코로나-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권고</li> <li>- 외국인 노동자(미등록 외국인 포함): 권고기간 동안 코로나-19 진단검사 수검</li> <li>※ 미등록 외국인도 비자 확인 없이 무료로 코로나-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, 검사과정에서 제공된 정보는 방역 목적으로만 활용</li> </ul>
5	검사장소	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
6	검사비	무료
7	문의처	서울특별시 120다산콜센터(02-120)